

다국적 기업에 대한 새로운 경고: 중국 반독점법 규제 기관 재판매가격유지 주목

Michael Zhang 작성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중국 반독점법”) 제14조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명확히 규율하고 있으므로, 동 행위는 중국 반독점법 집행기관의 조사 및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2013년 마오타이 주류에 대한 법 집행은 재판매가격 강제가 중국 법집행기관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임을 보여주었다. 최근 2013년과 2014년에 이은 법 집행과 민사 사건은 다국적 기업들이 자신들의 중국 반독점법 준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향상시키는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가격 정책을 위반하는 재판매업체에 대한 간접적인 ‘보복’이 중국 반독점법에 노출되는가? (고급 자동차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법 집행 사건)

2014년, 자동차 산업이 중국 반독점법 조사 및 법 집행의 초점이 되었다. 가격 담합 카르텔 혐의로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12곳에 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조사 및 법 집행 이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여러 지방 사무소는 중국내 고급 자동차 재판매망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고급 자동차 브랜드와 그 재판매업체는 중국 반독점법상 벌금을 부과받았다.

동 사건에 부과된 벌금은 이전의 가격 담합 카르텔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었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공급업체가 가격 정책에 불응하는 재판매업체를 제재하기 위해 비금전적인 불이익을 사용하는 경우, 잠재적으로 중국 반독점법 위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주목할 만한 내용을 제공하였다.

상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고급 자동차 브랜드 가운데 하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급업체가 더 낮은 재판매가격을 발표한 재판매업체에 의도적으로 인기가 많은 자동차의 공급을 지연하거나 시험 차량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통할 자원의 동결’을 통해 간접적인 불이익을 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상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와 같은 간접적인 제재 정책이 위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이며 중국 반독점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법 집행은 특정 내부 가격 정책 및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구조가 재판매업체에 강제되는 경우 중국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었다.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을 한 재판매업체가 중국 반독점법 위반으로 공급업체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Johnson Medical Instruments v. Beijing Rui Bang Yong He)

2013년 여름 다국적 기업과 중국 기업을 모두 포함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첫 민사 분쟁에서 중국내 선진화된 지역의 고등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중국 반독점법 민사 소송의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동 건은 원고인 Beijing Rui Bang Yong He와 피고인 Johnson Medical Instruments간의 분쟁으로, 원고는 피고와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재판매가격유지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동 민사 분쟁은 법원의 판단을 두 번 거쳤는데, 상해 고등법원은 중급 법원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같은 기념비적인 판결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분석시 중요한 점을 확인해주었는데, 이는 앞으로의 분쟁뿐만 아니라 반독점법 조사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의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재판매가격유지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명시적으로 결정하였다.

상해 고등법원은 독점계약은 내부자에 의해 보고되거나 공개되지 않으면 대체로 발견 또는 조사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담당 판사는 중국 반독점법이 내부자가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위법한 독점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를 중국 반독점법 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동 판결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분쟁에 법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매매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다국적 기업에 분명한 경고가 될 것이다.

또한, 동 사건은 재판매가격유지계약 자체가 자동적으로 중국 반독점법상 당연 위법 행위는 아니나 당해 계약이 '시장 경쟁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중국 반독점법하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이는 합리의 원칙이라고 알려질 것이다. 중국 법원이 이와 같은 분석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